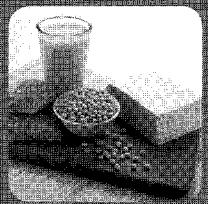


【축산법령】 2009년도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



2009년도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

◎ 추진계획(推進計劃)

① 사육단계 안전관리(飼育段階 安全管理)

-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 추진
-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감축 : (2008년) 25종 → (2009년) 18 → (2011년) 9/항생제 금지
- 항생제 등 잔류 위반농가 규제(6개월 출하제한, 출하시 정밀검사) 및 지도 강화
-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 마련(2009년 6월)
- 항생제 내성을 모니터링(2,700건/년)을 통한 저감 대책 효과 검증

② 사료의 위생·안전성 강화(衛生·安全性 強化)

-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 공장에 HACCP 적용 (2008, 94개중 76개소 81%)
- 소사료 공장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사용여부 일제점검 (2009년 3월)
- 동물성 단백질 사용여부 및 유해물질 검색을 위한 국내유통 사료 수거검사 등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

③ 사육부터 판매까지 예방적 안전관리제도(HACCP) 적용 확대

- 2012년까지 국내 생산·유통 축산물의 80% 이상

에 HACCP 적용 추진

- 컨설팅 업체 선정(2~3월초) 및 선행요건 등 충실히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업체·농장 지도·감독(분기별)
- 업종별 컨설팅 능력·경험을 충분히 검토(예: 농장 컨설팅의 경우 전반적인 사양·방역관리 지도능력 중시)
- ※현황(2008년 12월 31일 기준) : 농장(380)·도축장(145) 등 1,528개소/총 물량의 60% 수준
- HACCP 적용 농장·가공장 등에 인센티브 부여
- 균납·집단급식소의 HACCP 축산물 사용 촉진,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HACCP 계란 등 사용 확대 (학교급식: 육제품에 대해 2007년 의무화)
- 축사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사업 지원시 HACCP 적용 농장 우대

④ 가축질병 예방과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밀집 사육 방지 유도

-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(10년간 1조5천억원)
- HACCP 지정을 받았거나,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
-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, 밀집사육에 따른 폐해 방지 유도

◎ 도축·가공단계 안전관리(屠畜·加工段階安全管理)

❶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등 검사프로그램 개선

- 위해도·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사 프로그램 개발

-유해 잔류물질·미생물에 대한 위해평가·관리지침 제정(2009년 6월, WTO통보 필요)
-신증 또는 위해성이 높은 유해물질·미생물 검색기능 강화(2009년 : 항생제 30종 등 유해 잔류물질 104종, 식중독균 10종 검사)

- 식육 중 사용금지 약품 잔류여부 탐색조사(2009년 잔류물질 18종, 1,770건)

〈유해잔류물질 검색 강화를 위한 규제검사 확대 방안〉

- 잔류위반 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: 같은요령【별표 1】 제2호에 의한 시료채취단위량의 120% 이상 채취 검사(예, 소 1~2두 출하시 전두수, 3~5두 출하시 3두, 6~10두 출하시 5두, 11두 이상 출하시 6두 이상)

- 전수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 :
【현행】긴급도살 및 화농부위·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

【확대】① 긴급도살 또는 기립불능 증상인 경우

② 화농부위·주사자국 등이 있는 경우

-부상 또는 염증상태인 가축 : 동물약품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, 관절염, 폐렴, 유방염, 자궁염, 신장염, 방광염, 복막염, 늑막염, 심낭염, 심내막염, 급성 봉와직염 등이 관찰되는 경우

-주사자국·아물지 않은 수술부위가 있는 가축 : 체표에 주사자국이 있거나 최근의 동물약품 처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술부위가 관찰되는 경우

③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:

-생체·해체검사에서 위축성비염 등 가축전염성 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

-경구용 동물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식도 등의 변색, 패혈증, 비정상 체온·탈수·충혈 등 동물약품 처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전신성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

※2009년 상반기 중 위 내용을 중심으로 「식육중 잔류

물질 검사요령(농식품부 고시)」를 개정할 계획

-그간의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Codex 등 국제 기준·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정안 마련(2009년 3월)

-관계기관 및 생산자·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(2009년 4~6월)한 후, 2009년 6월 중 개정 시행 예정

❷ 도축장 등 도축·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

- 소비자단체 주관 HACCP 운용 평가(매년 실시) 등 도축장 위생 관리 강화

-1차 : 2~3월) 시·도 자체점검 → (2차 : 4~10월) HACCP 운용수준평가 → (3차 : 10~11월) 시·도 자체점검 및 행정처분 등 3단계 점검 실시

-지육(도체)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경매·가공시설 설치 : (2008년) 30% → (2012년) 90%

- 2010년까지 권역별 SRM 제거시설 구비 : (2008년) 5개소 → (2009년) 7개소 → (2010년) 10개소

-기 설치 작업장에서는 월 2회, 매회 3두 이상 SRM 제거 설비 기동

- 도축장·가공시설에 HACCP·위생 시설개선 자금 지원(2009년, 600억원)

❸ 도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 추진

- 도축검사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(2009~2010년) 및 시·도 검사관에 대한 의무교육 추진(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, 2009년 12월)

- 도축검사·질병방역 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: 2009년 4~6월간 1차 시범사업, 2009년 8~10월 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도 축산물 검사사업에 반영

-「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」과 질병정보시스템 연계 등 실 행방안 마련

- 모든 기립불능 소 등에 대한 BSE 및 잔류물질 검사
지속 실시

◎ 유통단계(수입포함) 안전관리

①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

-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 : 취약 시기 기획단속, 불량축산물 신고업체 집중단속 등
- 불량 축산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확대 : (2008년) 8,500건 → (2009년) 10,000
-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해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육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온유통체계(콜드체인) 강화
-일본 등 선진국과 CODEX기준,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금육의 유통온도 기준을 강화(2008년 8월)하여 권장 적용 중(2011년 7월 의무적용)
- ※ 유통온도 기준 강화: (현행) -20~10°C → (강화) -20~5°C

②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(2009년 6월)

-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의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을 완료하고, 2009년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
-이력제 시행기관, 축산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
-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도입
-1차(2009년 3~12월), 2차(2010년 1~11월) 시범사업 실시 후, 2010년 12월부터 본격 시행

③ 식육에 대한 도축장 실명제, 포장유통 조기 정착

- 시·도,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도축장 실명제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 실시(2009년 6월 21일까지는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점검)
- 2010년까지 닭고기·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전면 의무화
-(2007년 6월) 8만수 이상 도계장 → (2008년 6월) 5만수

→(2010년) 모든 도계·가공장 및 식육판매점
-분할 판매되는 소·돼지고기는 도축장 반출 시에 한해 포장 시행방안 검토

◎ 위해정보 공개 강화

①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을 개정, 식품안전 위반정보 공개 근거 마련(2009년 12월)

-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(영업자명, 영업장소, 위반 및 조치내역) 공개 추진
-현재 「축가법」과 「농식품부 고시」에 따라 위해축산물 발생시 회수내역 및 잔류위반농가 등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개
- 제공정보 : 수입축산물 검사결과·부적합 내역, 잔류 물질검사 결과·잔류위반 농가, 수거검사결과, 위생 감시결과, 회수내역 등을 매월~분기별로 공개
- ※ 종돈장에 대한 소모성질환(PPRS) 검사결과 공개도 추진(2009년 4월)

② 위해 축산물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요령 마련

- 「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(행정지침)」을 개정, 정보공개 요령 반영
-제공정보 : 제품명, 상호명, 위반내역, 회수방법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
- 국내·외 발생 위해에 대한 과학적 정보 및 위해 방지요령 등 상시 제공
-위해 발생시는 긴급경보시스템(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)을 통해 정보 공개·전파

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 관련

◎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

① 영업의 범위(營業範圍)

- 시행령 제21조(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)
마.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: 축산물(이 목에서는 포장육·식육기공품·유기공품·알기공품을 말한다)의 가공 또는 포장

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영업

④ 타인에게 축산물을 가공 등 의뢰 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행위까지를 말함

-본사 창고를 보유한 영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붙인 축산물을 지방 소재의 창고(영업자 소유 또는 임차)에 보관 후 유통시

-본사 창고까지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며, 지방 소재 창고는 축산물보관업에 해당

※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본사 창고 이외의 지사 창고 등은 각각의 영업행위를 검토하여 해당영업에 따라 신고토록 지도

2 시설기준(施設基準)

① 시행규칙 별표 10(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)

6. 축산물판매업

나. 개별시설기준

(5)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

(가)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(나)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(다)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·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.

② 시설기준: 영업소, 창고, 반품·교환품 보관시설

① 영업소와 창고는 서로 다른 곳에 설치·임차 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할 수 있음

-각 시·도는 영업신고(창고 등의 확인), 출입·검사·수거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

② 반품·교환품 보관시설의 규모(창고형 또는 냉장고형) 등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해

당 시설을 손쉽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시설은 부적절 할 것이나, 영업자가 유통·판매하는 양, 유통기간, 보관품의 처리방법, 평균 반품율 등에 대해 영업신고수리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-반품·교환품 보관시설은 영업소가 위치한 장소나 건물에서 운영하도록 규정: 창고가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창고에서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나,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영업소이며 반품을 위해 찾아오는 거래인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영업소에 위치 필요

◎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홍보

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(2008년 12월 22일)

관련

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·포장육을 판매시 식육판매표지판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할 의무 추가

-도축장명, 개체식별번호,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대한 사항 등은 영업자가 변경된 규정을 인지 및 준비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시 적발보다는 지도·홍보에 중점

② 「식육의 부위별·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」(고시) 개정 중

-개체식별번호와 선하증권번호의 표시 편의를 위하여 뒷 음번호표시 방안 추가

※ 고시 개정 완료시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짐

2 닭,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시행 추진(2010년)

① 2009년중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도축장과 판매장에서도 포장된 닭, 오리고기만을 판매도록 할 예정

-판매업은 포장된 닭·오리고기를 해포하여 절단·판매 금지

◎ 2009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계획

1 법률(法律)

- ※ 부상, 난산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 긴급도살 금지
- ※ 법률 명칭 변경 및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
- ※ 영업의 허가, 품목제조보고, 압류·폐기·회수 권한 이양
 -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의 영업(시·도지사의 허가) →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권한 이양
- ※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리 강화
 -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등 검사기관 관리 강화
- ※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
 - 계란집하업도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2 시행령·시행규칙(施行令·施行規則)

- ※ 위생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주기 강화
 -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하는 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(1회/2~3년)
- ※ 기타 식육가공품, 기타 알가공품 신설
- ※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축산물운반 신고 제외대상 확대
- ※ 닭,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

2009년도 국내산 식육종 전류물질 검사계획

- ※ 기관별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적(개체별 기준)

[표 1] 기관별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적(개체별 기준)

기관	모니터링										규제검사										진척율 (위반율, %)	
	소	돼지	닭	우리	양	말	소계	소	돼지	닭	우리	소계	소	돼지	닭	우리	양	말	총계			
서울	7,315	4,189	-	-	-	-	11,504	1,221(3)	141	-	-	1,362(3)	8,536(3)	4,330	-	-	-	-	-	12,866(3)	204.2(0.02)	
부산	400	1,650	-	-	-	-	2,050	586(2)	156	-	-	742(2)	986(2)	1,806	-	-	-	-	-	2,792(2)	111.7(0.07)	
대구	408	1,580(4)	1,000	-	-	-	2,988(4)	413	226	60	-	699	821(4)	1,806	-	-	-	-	-	3,687(4)	103.6(0.14)	
인천	637(2)	2,435(2)	1,034	80	-	-	4,186(4)	144(3)	616	62	-	822(3)	781(5)	3,051(2)	-	-	80	-	-	5,008(7)	118.1(0.14)	
광주	500	2,029(1)	-	249	-	-	2,778(1)	459	205	-	-	664	959(1)	2,234	-	249	-	-	-	3,442(1)	109.3(0.03)	
대전	769	2,297(1)	-	-	-	-	3,066(1)	75	2	-	-	77	844(1)	2,299	-	-	-	-	-	3,143(5)	136.7(0.16)	
울산	414	849(3)	-	-	-	-	1,263(3)	96	169	-	-	265	510(17)	1,018	-	-	-	-	-	1,528(20)	105.4(1.31)	
경기	6,761(4)	18,871(17)	3,918(4)	304	-	-	29,854(25)	5,419(37)	2,904(89)	42	-	8,365(126)	12,180(41)	21,775(106)	3,960(4)	304	-	-	-	-	38,219(151)	165.5(0.40)
강원	4,516	3,408	851	-	-	-	8,775	436(1)	325	-	-	761	4,952(1)	3,733	851	-	-	-	-	-	9,536(1)	255.7(0.01)
충북	1,520(1)	6,302(1)	2,315	547	155	-	10,839(1)	686(3)	483	78	-	1,247(5)	2,206(3)	6,785(3)	2,393	547	155	-	-	-	12,086(6)	113.8(0.05)
충남	1,269	5,955	2,148	-	76	-	9,448	773(6)	762	20	-	1,555(6)	2,042(6)	6,717	2,168	-	76	-	-	-	11,003(6)	121.6(0.05)
전북	1,027(4)	5,264(4)	3,000	498	-	-	9,789(4)	717(4)	627	74	-	1,418(4)	1,744(4)	5,891(4)	3,074	498	-	-	-	-	11,207(8)	107.0(0.07)
전남	1,018(1)	3,300(12)	2,049	709	-	-	7,076(13)	434(3)	328	83	-	845(3)	1,452(3)	3,628(1)	2,132	709	-	-	-	-	7,921(16)	106.8(0.20)
경북	1,827(4)	5,344(4)	2,203	-	98	-	9,472(4)	1,432(4)	836	91	-	2,359(4)	3,259(4)	6,180(4)	2,294	-	98	-	-	-	11,831(8)	120.0(0.07)
경남	1,058(3)	4,378(1)	1,078	180	-	-	6,694	2,105(4)	379	18	-	2,502(16)	3,163(10)	4,757(9)	1,096	180	-	-	-	-	9,196(20)	129.2(0.22)
제주	2,147	2,860	1,101	40	-	611	6,759	157	531	-	-	688	2,304	3,391	1,101	40	-	611	-	7,447	145.5(0.00)	
계	31,586(6)	70,711(39)	20,697(19)	2,527	409	611	126,541(64)	15,153(77)	8,690(117)	528	-	24,371(194)	46,739(83)	79,401(156)	21,225(19)	2,527	409	611	150,912(258)	137.2(0.17)		

* 도축 후 지육진류검사(간이정성검사) 및 규제검사(간이정성검사) 계획물량임.

* 경기도 규제 검사 위반두수 151두 중 50두는 2농가각각 33두, 17두) 위반두수임.



1 관련규정(關聯規規定)

- 농림부고시 제2007-18호(2007년 4월 11일) :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

2 검사대상 및 항목

- 검사대상 품목 : 소 · 돼지 · 닭 · 오리 · 양(염소 포함) 및 말
※ 축산물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도축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대상 기준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음
- 잔류물질 검사항목
- 총 104종 : 항생물질 30종, 합성항균제(구충제 포함) 43종, 호르몬 2종, 농약 29종

3 잔류물질 검사물량(표 2, 3. 참조)

【표. 2】 전년대비 검사 건수 비교

	검사 항목	2008년		비고
		모니터링검사	규제검사	
간이정성검사	모니터링검사	91,990 (83.6 %)	89,300 (81.2 %)	2.9 % 감소
	규제검사	18,010 (16.4 %)	20,700 (18.8 %)	14.9 % 증가
	소계	110,000	110,000	
정밀정량검사	모니터링검사	10,000	10,000	
	규제검사	120,000	120,000	
계				

【표. 3】 2009년 축종별 검사 계획 물량

	검사 항목	2009년						
		소	돼지	닭	오리	양	말	계
간이정성검사	모니터링검사	14,800	53,200	19,000	1,900	300	100	89,300
	규제검사	11,750	8,200	700	50	-	-	20,700
	소계	26,550	61,400	19,700	1,950	300	100	110,000
정밀정량검사	모니터링검사	2,865	3,915	2,345	545	270	60	10,000
	규제검사	29,415	65,315	22,045	2,495	570	160	120,000
계								

【표. 4】 도축장의 식육중 미생물 검사 결과

단위 : 미리, %

구 분	계 획	실 적	권장기준초과(비율)	부적합 도축장(위생감독 강화조치)
2008년	120,000			
■ 일반세균수	47,616	54,048	72 (0.05)	23개소(소4,돼지10,닭6,오리3)
■ 대장균수	47,616	53,754	9 (0.02)	7개소(소3,닭4)
■ 살모넬라	24,768	(추합종)		
2007년	120,000	155,029	251 (0.16)	34개소(소9,돼지7,닭13,오리5)
■ 일반세균수	38,975	49,605	54 (0.11)	18개소(소3,돼지7,닭5,오리3)
■ 대장균수	38,975	49,567	20 (0.04)	15개소(소6,닭7,오리2)
■ 살모넬라	42,050	55,859	177 (0.32)	1개소(닭1)
2006년	120,000	146,503	412 (0.28)	19개소(소4,돼지2,닭9,오리4)
■ 일반세균수	38,848	44,334	24 (0.05)	8개소(소2,돼지2,닭1,오리3)
■ 대장균수	38,848	44,339	18 (0.04)	8개소(소2,닭5,오리1)
■ 살모넬라	42,304	57,830	370 (0.64)	3개소(닭3)

* 살모넬라의 경우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사프로그램 시행상황 점검 및 재검토 필요(2009년 상반기)

〈검사물량 산정 기준〉

- 총 검사건수는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인 120천건으로 책정
-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규제검사 비율을 18.8%로 설정하여, 간이정성검사 물량 110천건 중 모니터링검사는 89,300건(81.2%), 규제검사는 20,700건(18.8%) 실시
 - 규제검사 비율 : (2008) 16.4% → (2009) 18.8%
- 도축장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 결과【표 4. 참조】
- 일반세균수 · 대장균수【표 5. 참조】

2009년도 식육중 미생물 검사계획

◎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

1 목적(目的)

【표. 5】 오리

구분	연도		2006		2007		2008	
		시료수	%	시료수	%	시료수	%	
일반 세균수	계	1,764	100.0	2,744	100.0	2,422	100.0	
	10 ³ 이하	60	3.4	46	1.7	44	1.8	
	10 ³ 이하	206	11.7	365	13.3	320	13.2	
	10 ⁴ 이하	530	30.0	909	33.1	849	35.0	
	10 ⁵ 이하	958	54.3	1,415	51.6	1,204	49.7	
	10 ⁶ 초과	10	0.6	9	0.3	5	0.2	
대장 균수	계	1,764	100.0	2,741	100.0	2,237	100.0	
	10 ¹ 이하	487	27.6	850	31.0	445	19.9	
	10 ² 이하	624	35.4	1,432	52.2	1,347	60.2	
	10 ³ 이하	651	36.9	457	16.7	445	19.9	
	10 ⁴ 이하	2	-	2	-	-	-	
	10 ⁵ 초과	-	-	-	-	-	-	

【표. 6】 일반세균수 · 대장균수

구분	소	돼지	양	닭	오리	합계
일반 세균수	도축장	15,890	17,815	600	8,197	2,046
	포장처리장	430	584	15	193	64
	판매업소	633	710	15	289	135
대장균 수	도축장	15,890	17,815	600	8,197	2,046
	포장처리장	430	584	15	193	64
	판매업소	633	710	15	289	135
합계	33,906	38,218	1,260	17,358	4,490	95,232

※ 식육 중 미생물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

◆ 탐색조사 :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·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

④ 검사 계획 : 120,000건 이상

- 일반세균수 · 대장균수【표 6. 참조】
- 살모넬라 : 소 300 도체, 돼지 1,000 및 닭 · 오리 22,000마다 각 1건
- 탐색조사 : 3,300건(소 1,100, 돼지 1,100, 닭 1,100)

※ 오리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음. (정부 발표 요약본)

② 관련규정(關聯規定)

- 농림부고시 제2007-57호(2007.9.3) : “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”
- 검역원고시 제2008-28호(2008.12.30) : “축산물 위해요소증점관리기준”

③ 검사대상 품목(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제4조)

- 국내 작업장(도축장 · 식육포장처리장 · 식육판매업소)에서 도살 · 처리 · 가공 · 판매되는 소, 돼지, 닭, 오리 및 양(염소포함)의 식육

④ 검사기관(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제5조)

- 모니터링검사 : 시 · 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